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 66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전 아시아인의 최대 축제인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으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협의체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협의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5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4. 참고자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 확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시민 및 단체, 공공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의·조정 및 심의한다.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계획 협의 및 심의
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홍보 및 안내활동
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자 교육
4.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사항
5.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장,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인천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2.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회장,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
3.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있는 관계부서의 장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고, 소관 부서의 장 및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협의체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은 협의체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